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 성안 및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심사의 모든 사항을 복지재단에 위임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공조적은 권한은 있으나,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, 서울시 복지재단에만 인증심사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정한 임의규정으로 관련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, 이를 위해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에 인증심사 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인증심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에 <u>인증심사를 의뢰</u> 하여야 한다.	제8조(인증심사) ----- ----- ----- <u>인증심사를 의뢰</u> <u>할 수 있다.</u>